

민간주도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실시

- 산자부, 전기용품 리콜제도 개시 및 외국과의 상호인증확대기반 마련 -

- 앞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은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리콜제도에 의해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시장유통이 근절되어 소비자는 전기적인 안전위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생산자는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용 전기용품의 외국규격획득이 크게 용이해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하던 전기용품형식승인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수행함.
 - 정부(시·도지사)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용품에 대해서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하고, 시중에 유통되어 개선·파기 또는 수거가 곤란한 제품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언론을 통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령함.
 - 또한, 내년 7월부터는 국제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계열로 구분하고, 국제안전기준(IEC기준)에 의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정부는 산업계 등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현재 개정중에 있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산업기술국)에서 확인이 가능함.

○ 최근 국제적으로 전기용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수용태세가 마련됨.

- 앞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리콜제도에 의한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시장유통이 근절됨으로써,

- 소비자는 전기적인 안전위해로 보호를 받게 되고, 생산자는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용 전기용품의 외국규격획득이 크게 용이해질 전망이다.

○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하던 전기용품형식승인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 안전인증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인증업무도 국제기구(IEC)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 또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불량·불법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개선·파기 또는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제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

- 우선 금년 7월부터는 현행 형식승인대상 1종전기용품 211개 품목 중 안전성확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현행기준을 적용하여 모델별로 인증을 실시하되,

※ 제외되는 품목 : 단상전동기, 전기 증기발생기, 전기 납땀인두, 전기 고기갈개, 전기빙삭기 등
39개품목

- 내년 7월부터는 이들 품목을 국제분류기준에 따라 148개 품목계열로 분류하여, 우선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 완제품부터 국제안전기준(IEC기준)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2002년 7월부터는 전기기기용 스위치, 절연변압기 등 중간제품류, 2003년 7월부터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용품보호부품 등 부품류로 단계적으로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기로 함.

· 이럴 경우 개인용컴퓨터·플로터 등 정보사무기기가 국제품목분류에 의한 새로운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편 정부는 기존에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과 법 시행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동 법령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로 함.

- 다만, 개정법령에서는 모델별 안전인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형식구분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들은 해당제품의 모델현황을 금년 7월 31일까지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만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은 개정법령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와 이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현재 개정중에 있는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산업기술국)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음.

○ 동 법령의 개정으로 얻게 되는 효과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위해요소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산업체에서 전기용품을 수출할 경우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외국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리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그 제품을 환불·교환 또는 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위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 아울러, 국제수준의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불만처리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 형식승인제도(현행)와 안전인증제도의 주요사항 비교

현행 (형식승인)	개정 (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전기용품 : 절연전선, 전열기구, 가정용 전기기기 등 211개 품목 (형식구분별 형식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품목 : 172개 품목 (모델별 안전인증) * 2001. 7월부터는 148개 품목계열별로 단계적으로 실시(국제안전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기관 : 정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기관 : 민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안전인증기관은 정부에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 정부(기술표준원)에서 민간 시험기관을 지정 * 기표원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형식승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 : 안전인증기관이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시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과 인정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과기 명령 : 불량·불법전기용품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거·과기를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수거·과기 명령 : 불량·불법전기용품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거·과기토록 명령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 ○ 사실공표·환불·교환·수리명령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위해요소 발견시, 사업자에게 사실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 환불·교환 또는 수리 실시를 명령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별 적용시기

품 목 구 분	품목수 및 적용시기			
	품목수	적용기한 (2000. 7~)	품목수	적용시기
1. 전선 및 전원코드	15	~2003. 6	10	2003. 7~
2. 전기기기용 스위치	9	~2002. 6	4	2002. 7~
3. 기타교류용 전기기기	3	~2002. 6	3	2002. 7~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등	10	~2002. 6	12	2002. 7~
5. 전기용품 보호부품	7	~2003. 6	5	2003. 7~
6. 절연변압기류	3	~2002. 6	3	2002. 7~
7. 가정용 전기기기	72	~2001. 6	48	2001. 7~
8. 전동공구	8	~2003. 6	16	2003. 7~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8	~2001. 6	19	2001. 7~
10. 정보/사무기기	6	~2001. 6	14	2001. 7~
11. 조명기기	31	~2003. 6	14	2003. 7~
계	172		148	품목계열

월간 『안전한 전기용품』의 광고게재안내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월간 『안전한 전기용품』은 비매품으로 협회 회원사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와 회원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안전한 전기용품』은 수익을 바라고 간행하는 유가지와 달리 광고료가 저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큰 광고반향을 원하시는 업체, 분들은 저희 협회 교육홍보부로 연락주시시오.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2층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교육홍보부
Tel : 02) 579-3291~5(내선번호 54번) Fax : 02) 574-6544